##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

## 2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10일, 정한석 의원 외 13명
- 나. 회부일자: 2022년 8월 18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(2022년 8월 25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・응답, 토론, 의결)

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: 정한석 의원
- 나. 제안이유
  - 관련 상위법인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함

#### 다. 주요내용

- 관계 법률에 따라 '대안교육' 및 '대안교육기관'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'대안교육시설'의 범주를 정함(안 제2조)
-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함(안 제6조)

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용조)

#### 가. 제안취지

○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상 용어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범위를 확대, 안 제6조제2항의 후단 신설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개정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정함(안 제2조)
-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 사업에 있어 기존 조례안의 대상 및 세부사업보다 넓은 범주에서 대안교육시설의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의 예방효과 상승과 대안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### 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- 7. **수정안의 요지** : 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